

중국 양란(분화) 수입규정 변화 안내

1. 수출 동향(단위;천불)

	2008	2009	2010	2011	2011.9	2012.9	증감율
양란(분화)	25,006	15,444	19,279	13,867	6,187	4,656	△24.74
- 중국	23,065	14,113	18,319	12,679	5,376	3,971	△26.13
- 미국	1,597	1,184	661	1,046	784	469	△40.27
- 베트남	49	-	-	61	0	0	-
- 기타	295	146	299	81	26	216	-

2. 수입규정 주요내용

- 최근 중국의 양란 수입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한국산 양란 수출 애로
- 수입 구비 요건 3가지(① 국제멸종위기동물 수입허가서, ② 식재 허가, ③ 수입묘목검역허가서) 중 “수입묘목검역허가서”에 대한 규정 변경

수입구비요건	기존	변경
수입묘목검역허가서	대행사 위탁, 대여 - 기 보유 업체에 위탁	대행사 위탁 불가 - 수입업체가 직접 획득

- 수입묘목검역허가서 획득방법

임업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입임목종자경영허가증, 생산허가증 획득 후 ○ 수입묘목격리재배단지시설허가증 획득 시 신청 가능 - (청도)시 → (산동)성 → (북경)중앙 단계 수속 필요
농업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종자종묘경영허가증 획득 시 신청 가능 - 등록 자본금 : 인민폐 3,000만 위안(400만 불) - 발급기간 : 수개월 ○ 자격을 갖추더라도 처음 수입하는 경우 수입량이 제한(50株) 되고 일정시간 동안의 격리재배를 거쳐야함

3. 바이어 의견 및 대응방안

- ①, ② 구비서류는 갖춘 상태이나 ③ 허가서의 획득 필요
 - 검역허가서 획득 시 자본금, 소요기간, 시설 확보 부담이 따름
 - 임업부 “(산동)성” 수속 단계 추진 중이며 12월 말 수속 완료 예상
- 구비서류 발급이 춘절(1월 말~2월 초) 전에 이루어질지 여부가 관건
- 조속한 기간 내 양란 수출협의회 개최로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 마련